

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606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15년 6월 30일
제안자 : 교통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서영진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 제476호)과 김태수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 제565호)을 서울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(2015.6.30.)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,

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2건의 개정조례안 내용을 통합·보완하여 「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」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함

2. 대안의 제안사유

- 서영진 의원 외 14명과 김태수 의원 외 10명이 각각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각각 그간 서울시 공영차고지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택시와 전세버스에 대해 서울시 공영차고지 사용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송사업자간 형평성을 담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음

따라서 2건의 개정조례안과 서울시가 제출한 의견을 통합·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함

3. 대안의 주요골자

- 가. ‘공영차고지’ 정의에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를 추가함(안 제2조제1호)
- 나. ‘공영차고지 사용허가’ 대상에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제2호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 및 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받은 자를 추가함(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)
- 다. 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중 시장의 승인을 받는 예외 대상에 전세버스와 택시를 포함함(안 제7조제1호)
- 라.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 및 일반택시 차고지 용도로 매입한 토지와 무상으로 이관 받은 토지에 대한 사용료 부과 등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동 조례를 준용토록 함(안 제11조제2항)

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· 관리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·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”를 “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「택시운송사업자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(이하 “운송사업자”라 한다)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(이하 “운송사업자”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2호다목의 일반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”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공영차고지 해당 권역을 지나는 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”를 “공영차고지 해당 권역을 지나는 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,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”로 한다.

제7조제1호 중 “장의차량”을 “장의차량, 전세버스, 택시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시내버스 및 마을버스”를 “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와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 및 일반택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정안(대안)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"공영차고지"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.</p> <p>2. ~ 3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「택시운송사업자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</u>----- -----.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)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를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의 특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(이하 "운송사업자"라 한다),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한정 면허 사업자,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(이하 "충전시설설치업체"라 한다)와 『자동차관리법』 제35조의8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의 내압용기 검사시설 등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공영차고지 권역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영차고지의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공영차고지로부터 6킬로미터 이내에 노선의 기점·종점이 있는 운송사업자와 <u>공영차고지 해당 권역을 지나는 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</u>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4조(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(이하 "운송사업자"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,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공영차고지 해당 권역을 지나는 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,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</u>-----.</p> <p>④ (생략)</p>

현 행	개정안(대안)
<p>제7조(입주업체의 행위 제한)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시내버스, 마을버스, 특수여객 <u>장의차량</u>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</p> <p>2. ~ 5. (생략)</p>	<p>제7조(입주업체의 행위 제한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장의차량</u>, <u>전세버스</u>, <u>택시</u> ----- --</p> <p>2. ~ 5. (생략)</p>
<p>제11조(준용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<u>시내버스</u> 및 <u>마을버스</u> 차고지 용도로 매입한 토지와 무상으로 이관 받은 토지에 대한 사용료 부과 등 운영관리(부대시설 포함)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.</p>	<p>제11조(준용) ① (생략)</p> <p>② ----- <u>시내버스</u> 및 <u>마을버스</u>와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<u>전세버스</u> 및 <u>일반택시</u> ----- ----- -----.</p>